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2023년 9월 5일(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부 | 증언대회

사회자 - 조은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증 언 - 피해 이주노동자 현장 발언

2부 | 토론회

좌장 - 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발제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 집
-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토론 -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 최재윤 고용노동부

참가자 전체토론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순서

증언대회

1. 참고자료1 ····· 5p

2. 참고자료2 ····· 13p

발 제

1. 농업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상황 및 상담결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 19p

2. 어업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상황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 집) ····· 36p

3.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 39p

토 론

1. 임선영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 51p

2. 최재윤 팀장(외국인력수급 및 체류대책 TF) ····· 53p

<증언대회1>

참고자료1

유형 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 입증의 문제

〈사례 1〉

○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입사 당시 현장 관리자가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고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처음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적어서 관리자가 안 볼 때 퇴근 체크를 하거나 수기로 기록을 남겼음

○ 노동자들은 사측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측은 퇴근시간이 기록된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인정해 해당 체불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함

- 근로감독관은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과실이 있으나 퇴근시간을 노동자들의 수기 기록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A와 K씨가 상담받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사측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퇴근 시 시간을 체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고소 사건으로 다시 신고함

〈사례 2〉

○ 스리랑카 노동자 C, D, S씨는 포천 소재 제조업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함

-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있지만 3~4개월 정도는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사측에 연락하여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확인 요청 및 센터가 산정한 내역을 전달하였고 사측도 확인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지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 입증자료를 확인하니, 해당 사업장에는 별도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기도 없고 사측도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현재의 체불내용으로는 사업장 변경 또한 어렵다고 안내하자 노동자들은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려해 진정을 포기함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유형 2 임금체불 피해를 원상회복하기까지 긴 시간과 체류자격 문제

○ 경기도 이천 소재 농장에서 남성 노동자 1명과 같이 채소 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일을 하던 여성 노동자 L씨에게 농장주는 처음 1년 정도 월급을 주더니 2016년 가을부터 식재료비만 조금 주면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 동료가 상담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을 진정하면서 농장을 떠난 후, L씨에게 농장주는 "땅을 팔아서라도 밀린 월급을 주겠으니, 혼자라도 남아서 일해라" 라고 달랬고, L씨는 참고 계속 일을 하면서 수첩에 일한 시간을 기록하였음
- L씨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 '성실근로자 재취업 제도'를 통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의 고용허가제 비자(E-9)가 만료되어 가는 2020년 초까지 그 농장에서 식재료비만 받으며 견뎠음
- 한국을 떠날 시기가 오자 L씨는 매일 저녁마다 농장주에게 "지금 내가 한국 끝났어. 캄보디아 가야해요. 돈 주세요!" 하고 항의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노동시간 수첩을 농장주에게 보여주었고, 어느 밤 농장주가 비닐하우스 숙소 문짝을 깨고 들어와 L씨의 수첩을 빼앗아 불태움

○ L씨는 상담센터 도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노동부 진정도 하였음.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은 농장주는 3년 8개월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시간이 기록된 수첩이 불탔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만 계산하여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음

○ 노동부 진정 결과, 3400만 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지만, 농장주에게 돈을 받을 수 없어서 L씨는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상담센터 도움을 받아 신청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가 있고 당시 기준으로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보증보험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미 한번 보험금이 지불되어(같이 일했던 남성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보증보험금을 신청하여 200만 원을 받았음) 농장주의 임금 체불 전력을 이유로 L씨는 거절당함
- 소액 체당금(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농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고, 땅을 팔아 준다던 그 땅도 농장주 소유가 아니었고, 보증보험 거절 이후 농장주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옴

○ 밀린 월급을 돌려받기 위해 노동부 진정, 보증보험 신청 등 여러 구제절차를 받는 동안 E-9 비자 기한이 만료되어 G-1 비자를 임시로 받았으나 취업활동이 허가된 비자가 아니었고 기한도 짧아서 빈번하게 연장 신청

을 해야 함

- 2023년 2월 L씨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허가를 내주고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지구인의 정류장 상담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유형 3 어업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발생 시 구제의 어려움

<사례 1> E-9-4 동티모르 국적 A씨

○ 코로나 특별 체류기간 연장으로 총 5년 9개월 근무(22년 4월 퇴사)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중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12,927,27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전부 인정)을 발급받는 조건과 사업주의 지급약속(구두)으로 형사처벌은 취하했으나 사업주의 미이행으로 민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됨.
- 산재 미가입 사업장(어업 및 5인 미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금체불 보증보험(400만원) 역시 특별 체류기간 연장시 추가 가입했어야하나 가입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음.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 진행함. 임금소송 및 사업장인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접수. 임금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사업주의 재산명시 신청 접수. 재산명시 신청 결과 300만원 상당의 청약저축 1건 확인.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26만원 수령.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선박가압류 이후, 공단에서는 선박에 대한 경매는 법률구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박 경매 진행 중임

<사례 2> E-10-2 베트남 국적 B씨

○ 22년 약 10개월간, C선박에서 선원으로 승선근무 후 하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함

- 선원근로감독관은 제출 서류와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를 종료함. 마지막 달 15일분의 임금체불은 인정하였으나, 퇴직금은 선주의 주장을 인용하여 선원의 책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음.

- 23년 3월 수산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소송을 접수하였으나, 선주의 불인정 및 피해 발생 주장으로 소송이 지연됨

<사례 3> E-10-2 베트남 국적 D씨

○ 22년 8월까지 2년 2개월 20일 선원으로 승선근무 후 하선. 퇴직금 체불 진정함

- 사례2와 동일 수산청의 동일 감독관이 동일한 방법(서류 및 유선)으로 조사 진행. 감독관은 피진정인(선주)이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과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피진정인이 대납하였기에 퇴직금 지급액으로 정산을 모두 인용하여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 진정인은 재진정 의사를 밝혔으나 지방해양수산청의 실제 선원근로감독관이 1명으로 재진정의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재진정시 본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심리적 압박(진정인이 타지역 근무 중으로 방문이 어려움)에 결국 재진정을 포기함.

<성요셉노동자의집 상담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유형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움

○ 경남 창녕 소재 제조업에서 2019년 10월부터 근무한 이주노동자 H씨는 2022년 3월경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쇠가 떨어져 다치는 산재 피해를 당함. H씨는 산재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한국어도 서툴러 동료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당시 사업주는 쇄골 골절에도 약물치료 정도만 받도록 함)

○ 2022년 8월 근무가 종료된 후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관련 자료를 모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

- 2022. 11월 노동지청 조사에 사업주와 H씨(통역자 동석)가 출석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최저시급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10,119,452원이라고 하였음
- 노동지청 조사에 출석한 사업주는 112에 전화하여 “노동자가 돈을 달라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어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고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이 노동지청으로 출동하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함
- 경찰은 근로개선2과에서 나오는 H씨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체류기간 도과를 확인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H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함
- 센터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위해 출석통보를 받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응한 H씨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면제제도 적용대상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 절차를 진행함

○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된 H씨에 대해 센터에서 보호일시해제 및 보증금(2,000만 원) 감면 요청을 했고, 출입국 측은 임금체불 진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하고 보증금도 50% 감면함

○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급 및 지연이자와 함께 형사처벌 취하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였고, H씨는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의 처벌을 희망하였기에, 2022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사업주에게 통지됨

-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2023년 5월 민사 합의서(임금+퇴직금+지연이자=12,633,077원)를 사업주와 작성하였고, 다음날 합의금이 입금됨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구제과정에서 위 사례처럼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비슷한 과거 사례 중, “노동자가 회사 내에 있는 집기를 훔쳐갔다”라며 절도신고를 하여 H씨의 사례처럼 노동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음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증언대회2>

참고자료2

퇴직금 받으려다 체포된 이주노동자
- 구멍 숭숭 뚫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

1. 사건개요

피 해 자 : OO팅(베트남, 남성, 1988년생)
근무업체 : S기공(창녕군 소재)
근로기간 : 2019.10.05.~2022.08.03.
피해내용 : 퇴직금&임금 약 1,160만원, 산재피해 미보상*
체포경위 : 2022.09.23.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팅 씨는 대질조사를 위해 2022.11.11. 출석함. 이 자리에 출석한 사용자는 '협박을 받는다' 며 허위신고를 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팅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 하여 출입국에 인계함.

* 〈참고〉 팅 씨는 2022.3. 업무 중 사고로 왼쪽 쇄골골절상을 입음. 이후 병원을 찾아 두 번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아픈 중에도 근로할 것을 요구받아 적절한 치료도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보내온 약을 먹으며 근로했다고 함. 현재도 통증이 있는 바, 본 센터는 진료와 산재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출입국과 보호해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퇴직금 등 체불 피해를 사유로 보호해제/출국유예/자격변경 등을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상당 액수의 보증금 혹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2. 해당 사건 관련 문제점 요약

경 찰 : 사용자의 허위 협박피해(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를 받고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지청 출석조사 현장에 출동함(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협박 상황이 아님을 확인했다면 사용자의 허위신고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오히려 팅 씨의 신분을 조회한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현행범 체포' 하여 출입국에 인계함.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임의동행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식이 과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런 조치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은 제84조(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와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와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범죄피해자 구조와 인권침해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시행규칙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 조사'는 배제되어 있는 바, 금번 사례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 법무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온 바, 이제라도 관련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 노동관계법령상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그 권리구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가 체포되어 출입국에 인계되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경찰은 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라도 해당 범죄 피해로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에 해당 시행규칙 개정보완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로 조사받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임. 이야말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임.

3. 해당 사건에 대한 센터의 의견

해당 법령의 미흡함 속에, 피해자 권리구제를 우선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또다시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거액의 임금체불과 산재미보상 등의 피해자를 체포하여 인계한 이번 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이는 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킬 것인 바, 조속한 법령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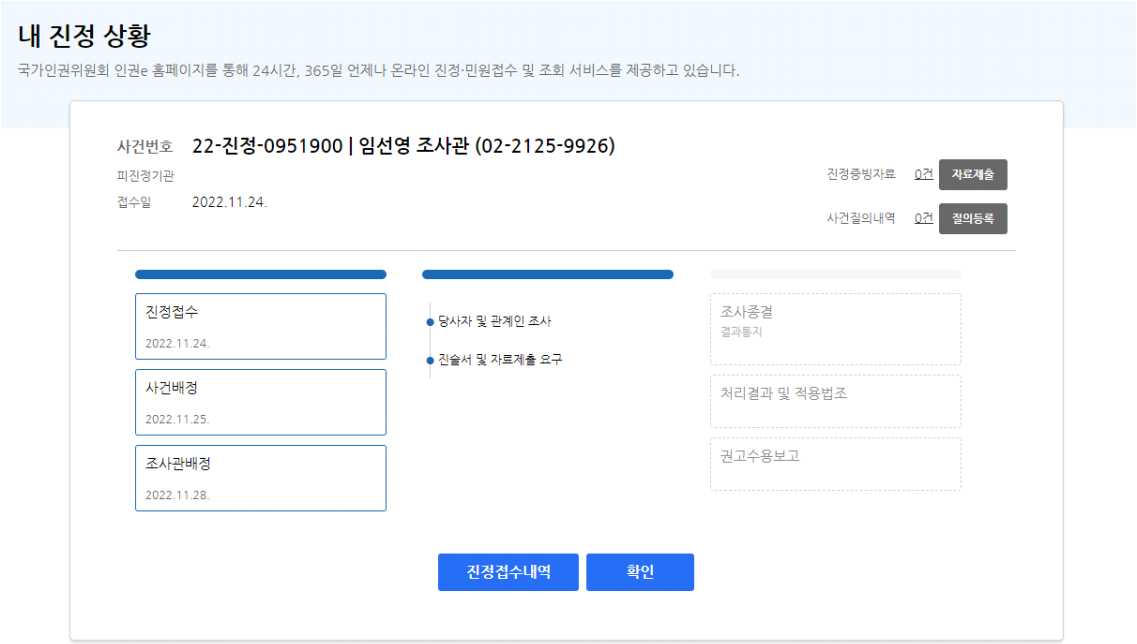

피해자 HO DUC THINC은 2022년 11월 11일에 사업주(정**), 창원서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찰관(이름 미상),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조**) 에게(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당했습니다.

- 사건발생 -
창원고용노동지청 2층(근로개선지도1과)

- 사건진행 -
퇴직금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2022.9.23)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팅 씨는 대질조사를 위해 2022.11.11.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함. 이 자리에 출석한 사용자는 '노동자로부터 협박을 받는다'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팅 씨의 신분을 확인한 후 대질조사를 마칠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였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 한 후 출입국으로 인계함. 이후 팅 씨는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여 2022.11.16에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고 보호일시해제됨.

- 사건발생이유 -
사업주 : 불법고용, 임금체불, 산재미신고 및 미보상(2022.3, 왼쪽쇄골골절)도 모자라, 협박 받

는다는 허위신고를 통해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위협하면서 체불금품을 대폭 깎아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임.

경찰 : 협박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업주의 허위신고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현행범 체포' 하여 출입국에 인계한 바, 과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런 조치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또한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하려고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신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은 제84조(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와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와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범죄피해자 구조와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시행규칙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 조사' 는 배제되어 있는 바, 금번 사례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

고용노동부 : 진정인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공무원이 피해 노동자가 체포되어 출입국에 인계되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에 해당 시행규칙 개정보완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로 조사받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조치' 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임.

<발제1>

농업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상황 및 상담결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선진국 정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떼였는데, 받을 길이 없었네

- 한국정부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업분야의 사업장에 배치하여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하고도 그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이찬 활동가(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에 이주노동중인 노동자들의 연간 임금체불 피해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노동자들은 이 체불된 임금 중 얼마나 피해배상을 받고 있을까?

한국정부가 엄격한 관리시스템으로 구인 사업장과 구직 이주노동자들을 선발하고, 독점적으로 알선하여, ILO 협약이 금하는 바,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정부에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미청산 사례표>

번호	지역	노동부 진정일	체불 발생기간 (청구기준)	노동청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일	피해자 이름 (비공개)	2023년 8월까지 진행상황 (고용주)	체불임금확인서 상 체불 금액	형사 재판	민사 판결	서울보증 일부배상	체류상태
1	논산	2016년 7월	2015년 7월 23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5월 22일	2명	지급각서, 약속 5차례 이상 어기고, 처벌도 안받음	6605312 (니몰: 미청구 8,470,264)	없었음 (근로감독관이 합의/취하 유도)	(이행권고확정 : 2017년6월30일)	2백	E9재입국
2	양평	2018년 10월	2017년 9월 18일 ~2018년 8월 29일	2019년 1월 11일	2명	폐업, 지급의사 없음 확인	11,822,233원+11,215,025	형사합의 (19년 4월8일 -불이행)	(선고일 2019년8월22일)	2명 각 2백	출국 / 미등록
3	포천	2018년 10월	2015년 6월 21일 ~2018년 9월 30일	2019년 7월 3일	1명	지급이유.노동시간 부인 / 회피 (계속 운영) / 미등록노동	10,652,784	(선고일 2020년11월26 일)	(선고일 2021년3월18일)	2백	미등록
4	이천	2018년 10월	2015년 1월 29일 ~2018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7일	2명	노동시간. 숙식비 합의우김 / 아들 명의로 농장 / 2명 g1비자3년후, 미등록노동	15,489,939+2,148,064 / 15,613,458+2,111,209	(선고일 2020년8월21일) 벌금100	(선고일 2022년5월12일)	거부됨	G1 미등록 /G1 미등록
5	여주	2019년 4월	2015년 9월 ~2019년 4월	2019년 11월 5일	1명	처이름 농장계속운영 / 귀국	33,442,647 (출국만기보험포함)	(선고일 2020년9월22일) 벌금400	(항소심) 18,262,297	2백	출국
7	이천	2020년 3월	2015년 6월 22일 ~2020년 3월 8일	2020년 6월 29일	1명	지급거부 /도주	-	(근기법위반 부분만 기소) 벌금 6백만원	-	거부됨	G1
8	충주	2021년 7월	2019년 3월 29일 ~2021년 6월 7일	2021년 11월 30일	1명	최종 6개월간임금 미지급 포함 /지급거부 /노동시간 제출거부	21,631,504	(항소기각판결: 2023년8월9일)	-	2백	출국
9	하남	2020년 7월	-	2020년 10월 20일	1명	지급거부	7,273,074	-	-	2백	E9재입국
10	밀양	2020년 7월	2019년 12월 1일 ~2020년 8월 16일	2021년 5월 10일	2명	지급의사없음 / 재산 확인 안됨	11,991,691/ 9,789,530	-	(2022년5월17 일)	2명 각 2백	E9

11	남양주	2020년 9월	2018년 1월 23일 ~2019년 10월 4일	2020년 10월 21일 (기소송치)	1명	지급의사 없음	14,292,360	-	-		미등록
12	이천	2021년 3월 29일	2019년 10월 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5월 10일	1명	파산 / 소재불명	25,534,326	기소중지 (소재불명)	2022년8월23일		미등록
13	밀양	2021년 3월	2019년 3월 28일 ~2021년 1월 26일	2023년 1월 4일	2명	민소진행중	(3,105,562+8,683,738) +(1,680,776+5,694,109)	(구약식 2023년5월31일)	-	2백 /3백50	E9
14	논산	2021년 4월	-	2021년 8월 20일	2명	민소2심 진행중	7,000,754+6,126,096	-	2022년7월19일	2명 각 2백	미등록/G1
15	이천	2021년 5월 30일	2017년 6월 ~2021년 5월	2023년 3월 30일	1명	민소 진행중	12,994,253	-	-	-	E9재입국
16	금산	2021년 6월	2020년 3월 1일 ~2021년 6월 11일	2022년 3월 21일	1명	민소 2심 진행중	9,857,272	(구약식 2022년2월17일)	2심 진행중	-	E9
17	포천	2021년 7월	-	-	5명	민소 진행중	9,590,160+	-	-	-	E9/미등록
18	이천	2021년 8월 5일	2019년 11월 1일 ~2021년 7월 29일	2023년 3월 30일	4명	민소 진행중	7,751,411+6,712,581 +7,800,718+14,536,443	-	-	일부수령	E9재입국
19	밀양	2021년 9월	2020년 1월 1일 ~2021년 9월 3일	2022년 6월 2일	2명	민소 진행중	9,590,160+9,590,160	진행중	-	유예	E9
20	밀양	2021년 10월	2020년 1월 1일 ~2021년 10월 28일	2023년 2월 16일 (2023년 3월 2일)	2명	민소 진행중	15,683,749+10,977,549	(구약식 2023년2월28일)	-	유예	E9
21	밀양	2021년 11월	2021년 7월 1일 ~2021년 11월 9일	2023년 3월 14일 (2023년 3월 9일)	2명	보증보험금 지급신청	1,956,675+2,025,815	-	-	유예	E9
22	여주	2021년 12월	2020년 12월 1일~	2023년 8월 5일 (2022년 12월 15일)	5명	민소 진행중	(2,811,858+7,620,536) +10,288,806+7,151,705 +2,557,347+2,557,347	벌금5백	-	3명 각 2백	E9/E9재입국

〈표〉 22개의 사례표 : 이 사례들은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 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 접수되었음. 본 단체에서 진정, 고소 등 권리구제를 위해 지원한 사례 중 노동청과 형사법정의 확인과 법원의 '이행명령'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임.

모든 사례의 노동자들이 '대지급금' 을 청구할 수 없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용자 의무가입 보험인 '임금체불 보증보험금' 청구도 거절당함.

1. 농업노동자 임금도둑질 원인 분석

(1) 임금도둑질의 유형

A. 월별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례표의 1, 2, 7, 9, 10, 12, 13, 16, 17, 21 번 사건)

B. **'숙식제공' 명목으로,** 즉 비닐하우스 등 임시주거시설을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핑계로 임의로 그 공제액을 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지속적으로 공제**하는 과소지급.
(사례표 중 17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고용주가 비닐하우스 등 주거시설 제공을 핑계로 매월 30~40여만의 임금을 상시적으로 공제)

C. **추가노동시간의 임금 미지급** : 고용주가 과다한 노동시간을 노동하게 하고, 그 기록을 안 남기거나 은폐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노동수당의 체불
(사례표의 모든 사건)

D. **실발생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적립액' 차액의 미지급** (출국만기보험금과의 차액)
(사례표의 21번을 제외한 모든 사건)

E. **연차휴가 혹은 그 수당의 미지급** :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가족간/이웃간 독립된 고용허가를 받아 4인 이하의 사업장인 것처럼 하고 연차휴가와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여 발생하는 체불 (3, 4, 5, 11, 15, 17, 18, 22번)

F.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명' 을 해준다며 임금을 갈취하는 경우 : 경남 밀양 200~500만원

통상 한 진정사건에서 위 A ~ F 의 유형은 겹쳐져 있다.

가장 고질적이며 ‘사실이 은폐되고 공적 확인’이 유예되고 있는 유형의 임금도둑질은 C유형(추가 노동시간의 임금 미지급)으로 22개의 사례 모두가 해당되었으며, B유형(숙식제공명목의 임금삭감)의 경우는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이 그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애초 노동부는 (지금도) 현저히 소멸해가며 폐가가 늘어나는 ‘농촌지역 상주 노동자의’ 주거권에 대해 어떤 지침도 없었는데, 2017년 2월 처음이자, 졸속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어 고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주거시설이 아니라도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등)’ 그 시설에 이주노동자를 집단 수용할 수 있고 그 임금을 13%까지 공제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도둑질을 부추기고 방관하고 있다.

(2) 왜 같은 유형의 노동시간 속임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근로기준법 63조]를 핑계로 들며, ‘실제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판단할 최소한의 행정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노동청의 소극적 태도가 큰 원인이다. 농업노동자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증빙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 위 피해노동자들 중 ‘1번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00:00 ~ 00:00’으로 되어 있다. 근로감독관은 ‘실제노동시간’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통상임금’만으로 체불임금액을 산정한다. “노동자가 제출한 노동시간표에 고용주의 서명이 없으니,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는 노동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7번 사례의 경우, 3년간의 임금 미지급을 증언하기 위해 당사자가 적어두었던 노트 기록을 고용주가 불태우고, 고용주는 스스로 작성하였던 달력 기록을 제출하고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실제 노동시간은 무시하고 계약서에 적힌 ‘최저임금’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기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체불액과 노동자의 노동시간 기록에 근거한 체불액은 약 2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3. “한국 노동청에 신고하면 내 밀린 임금을 찾아주겠지?” 라는 기대 혹은 착각

(1) 고용주들은 체불임금을 순순히 주지 않는다. 그 금액조차 삭감하려 한다.

‘남의 나라 노동당국’에 ‘영어도 아닌 제 3의 언어’로 찾아가 피해신고를 하는 일은, 20대의 외국인 청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비자가 소멸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멀어지거나, 사업장 이동이 안되어 체류권이 위협받을 때 하는 ‘나중 일’이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도둑질을 당하더라도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우선 고용주에게 ‘지급을 호소한다. 그런데, 고

용주들이 ‘안 주겠다.’(지급 의사 없음) 고 말하거나, ‘줄 돈이 없다’ (지급 여력 없음.) 거나 ‘줄 돈 다 줬다.’ (지급 사유 혹은 의무 없음) 는 태도를 보일 때,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을 먼저 요구한다.

이 때, 고용주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하여 위 체불임금의 영구적 착취를 시도한다. 고용주들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서명을 해줄테니,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였고,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에 노동자들이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협박이 뒤따른다. 노동자들은 ‘남의 나라’ 특수사법경찰에 계속 들락거리면서, 외국어로 자신의 증언을 근거있게 피력할 여력이 없으므로, 즉, 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서 생활비와 가족을 위한 소득을 유지해야하므로, 얼마간 체불되어있는 임금을 포기하고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는 것’ 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2) 용기를 내어 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긴 여정의 시작임을 뒤늦게 알다.

위 사례표의 노동자는 모두 용기를 내어 ‘진정제기’ 를 하고, 아래와 같은 복잡한 구제과정을 거쳤거나 (사례 1 ~ 10. 12, 14, 17번) 조만간 그 과정을 마칠 피해노동자들이다.

- A. 해당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 B. 해당 노동청 외국인력팀 등에 피해사실 항변
- C. 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
- D. 체불액 감액이 수반되는 조정 (합의)
- E. 사용자의 지급 거부
- F. 통상 E-9 체류자격 회복 (조사기간의 실직에 따른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장치 없음
- G. 민사소의 제기
- H.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는, 임금체불보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만 (상한액: 200만원~400만원)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음.
- I. 대지급금 신청이 거부됨: 노동자는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혹은 민사 판결문으로 ‘대지급금 지급’ 을 신청하지만, ‘지급대상’ 이 아니라며 거부당함.
- J. 민사소 (항소심 진행의 경우도 있음)의 승소
- K.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

  L. 포기, 혹은 막연한 기다림

이주노동자들이 임금피해를 구제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땐, 그래도 한국이 ‘선

진국, 민주주의 나라’ 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통해 ‘당연히’ 떼인 임금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고용주가 터무니없이 잡아뗄 때, 근로감독관이 ‘고소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하여, 추가적 조치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청’ 이 사실관계를 신속히 가려내어 ‘곧 자신의 임금을 받게 해줄 것’ 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위 과정 중 A~K 단계에서 체불금품을 고용주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으며, 이들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사례표 상의 모든 사건의 피해노동자들은 E~I 까지 약 3년, 그리고 E~L까지 약 6년 이라는 기나긴 기간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⑶ 임금체불과 체류기간 만료

“체류기간은 다음 주에 끝나요! 비행기표 샀어요! 그런데 사장이 월급과 퇴직금을 안줘요. 어떻게 해요? ”

<진정, 민사소송 기간 예시>

피해자이름 (비공개)	체불 발생일	노동청 신고(진정)일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일	조사소요 기간	민사재판 판결일	판결까지 소요기간	미청산 체불금액 (원금, 만원)
10번	2019년 12월 1일 ~2020년 8월 16일	2020년 8월	2021년 5월 10일	9개월	2022년 5월 7일	21개월	2,178만
12번	2019년 10월 1일 ~2020년 10월 31일	2020년 11월	2021년 5월 10일	6개월	2022년 8월 23일	21개월	2,553만
13번	2019년 3월 28일 ~2021년 1월 26일	2021년 3월	2023년 1월 4일	22개월	미정	30개월~	1,917만
15번 외 4명	2017년 6월 ~2021년 5월	2021년 5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2개월	미정	30개월~	4,979만
8번	2019년 3월 29일 ~2021년 6월 7일	2021년 7월	2021년 11월 30일	4개월	2023년 8월 9일	25개월~	2,163만
20번	2020년 1월 1일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0월	2023년 2월	16개월	미정	23개월~	2,665만

표 13 : 농업노동자 진정시, 노동청 조사기간 및 민사재판 확정판결일까지 걸린 기간
(* 진정일 기준 3년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진정단계에서부터 신청하지 않음)

⑷ 노동청 근로감독과의 조사기간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배치된 노동자의 알선기관은 노동부이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노동부 소속 관할노동청이며 통상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그 조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그 근로감독관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조사기간이 2년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공공연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상담자의 경험으로는 고용주들의 조사 비협조, 노동시간 등 사실관계의 은폐, 근로감독관이 노동시간을 조사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중 교체 (3, 15번 사례) 등의 이유 때문이다.

피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주장은 인용되지 않으며, 근로감독과 자체에 '농업노동 시간을 측정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감독관들은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서명한 근로시간 기록문서'를 갖고 오라거나, '전 기간의 노동시간이 담긴 영상기록물'을 가져오라는 등 무리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것은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중요한 이유이다.

사용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과 자료제출을 연기하며 조사를 끌어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더 심각해진다.

첫째, E9 비자 기간이 임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노동자들은 진정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국전 공항에서 '퇴직전 몇 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차액, 연차 휴가수당을 못받고 출국한다'며 이를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 일부 고용주들은 '성실근로자 다녀오면 (재입국하면) 덜 계산된 임금을 줄 것이다.'라고 회유하며 노동자들의 항의를 무마한다. (사례표 중 13, 19번)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임금착취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재입국 이후로 지급청구를 미뤄서 결과적으로, 3년 이상된 임금채권을 잃기도 한다.

둘째,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법경찰관 앞에서 고용주와 대질하여 임금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설사 한국이라는 나라에 '채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간, 그것이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근로감독관들 조차 이와 같이 '임금체불 조사기간이 길어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은 민사 소송 제기일이 늦어지게 되고 그 손해액 산정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상의 체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표 중 4, 13, 19번)

그렇다면, 이주노동자가 공공 기관인 노동청을 통하여 '임금체불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요청하는 일이 도대체 효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한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아무런 확인서 없이, 시급히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⑸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 보증보험금'도 못받는다.

수개월 ~ 2년에 걸친 조사에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어도 이를 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 보통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간이 대지급금 제도'와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또한 쉽지 않다. 이 경우, 고용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불액이 소액이라면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금'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위 20개 사례의 노동자는 지급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감독관들 중에서도 이 제도들의 공백과 결함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모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종결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줄테니 진정을 철회하시고, 공단에 가서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세요" 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사례표 중 1번 사례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를 통해 "해당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 3조 및 동 시행령 8조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부지급' 통지서만을 받았다.

피해노동자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서울보증보험 증권'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고용주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거나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노동자에 대한 '지급보류'를 요구할 시,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다. (사례표 중 15, 17, 19, 21번)

'가입기간이 도과했다'거나 (4번 사례) '가입이 안되었다'거나 (7번 사례) '실질고용주와 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가 다르다' 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한다.

3. 민사 법원이 확정한 채무 변제 명령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 지급받을 가능성은 0% ?

⑴ 법원 판결문을 받았어 ! 신고한 지 5년만에! 그런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 한없이 지연되는 '정의' = 회복할 수 없는 '피해'

< 두가지 사례 >

A. 1번 사례의 경우 이주노동자는 2015년 6월21일부터 ~ 2016년 7월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받고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고용주는 곧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썼다. 근로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벌도 피했다. 그러나 이후 10차례 이상 지급기일 약속을 어겼다. 이에 1년후 (2017년 6월)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에 피해노동자**는** 재진정을 해야했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어렵게 휴무일을 요청하여, 법원에 민사소를 제기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집행문을 받았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믿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거절 통보'를 했다.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고용주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정을 아는 고용주는 연락을 끊었다. 1번 사례의 이주노동자의 E9 취업 VISA가 끝나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했다. 다행히 '운 좋게도' 2023년에 E9노동자로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에 체류중이므로 고용주를 찾아 "제발 좀 지급해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민사재판이라도 걸어 귀찮게라도 해야하나?

B. 5번 사례: 2015년 9월 ~ 2019년 4월, 발생한 약 3천만원의 누적적 임금(퇴직금 포함)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5번 사례의 이주노동자는 5개월만에 체불임금 확인을 받았으나 (출국만기보험금 기 납임금제외시 약 23,000,000 원) 이 때 체류기간이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자의 임금지급은 거부했다. 2020년 3월, 이주노동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9 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나서, 출국해야 했다. G-1비자로라도 재판에 참여하려하였는데, 이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E-9 비자가 끝나자, 그해 4월 귀국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23일 형사재판에서 고용주는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민사소송은 2심까지 진행되었고, 2021년 10월 20일에 18,262,297원의 체불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이후 22년 초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강제집행 신청'을 신청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확인하기 힘들다.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단지 200만원의 보험금만을 받았다.

결국, 사후의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1천 8백만원 + 지연이자 5년여 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재산을 감추고 있고, 고향마을에 돌아가서, 재입국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상담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 접수된 300건 이상의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중 (사례표 상 22개의 사건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수행의 결과로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으로, 고용주가 채무변제를 순순히 한 예는 없다.

피해노동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 명시신청', 체불사업주의 재산 조회신청'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며 기다리기는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체불사업주의 재산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재산을 찾은 경우는 한차례도 없다.

이는, 체류자격이 그나마 안정적인 한국국적의 임금피해노동자들도, 법률.행정 전문가들의 조력없이는, (설사 전문가들의 조력이 있다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하물며, 등록 체류기간도 소멸한 (곧 소멸할) 이주노동자는 어떠할 것인가?

4.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노력은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례표의 사건피해자 대부분은 임금체불 신고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이 걸려 민사 판결문을 받는다. 그런데 E9노동자의 (최장)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체불 임금을 얼마간이라도 받기 위해서 (설사 현금을 받기 힘든 현실이지만, 채권이라도 확인받아 두어야 하므로) 한국정부가 마련해 둔 '진정 /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 노력을 할 동안의 생활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는 그와 같은 '임금 도둑질 피해자' 에 대한 피해의 구제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임시비자(G1)' 을 발급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비를 얻는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며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수백~수천만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여 가뜩이나 쪼들리는 노동자에게, 그 소정의 피해보상장치에서조차 배제시킨 채, 스스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어서는 안되며, 남의 돈을 받아 생활하라!" 라고 명하는, 참 비합리적인 조치이다.

5. 임금도둑질 사업장 알선은 국가가 독점하여 강제로 하는데, 피해구제 활동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야하고, 체류권도 걸어야 한다.

(1)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 을 하면 '체류자격을 박탈한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주의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고 하지만, 반드시 '피해노동자가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받급받아, 노동부 지역협력과에 제출해야만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체불사업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례표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기까지 '8개월 ~ 2년' 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동안 피해노동자는, 체류권과 취업권리가 불안정한 채 지내야 하며, 사후에 노동부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안할 때, 그리고 그 체불액이 노동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자신의 체류권을 박탈당한다.

사례표의 사건들은, 피해노동자들이 민/형사 재판 결과를 얻는데까지는 진정일로부터 20개월~30개월이 걸렸다. 이때까지 그 고용주들이 '체불 사실없음' 을 주장한다.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 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다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도둑질을 '평온히 유지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임금도둑질 사업주에게 알선하고, 그 사업주 허락없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강제하여, 결국,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도록 하였고, 피해 피해보상장치에서 노동자를 배제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지급금 제도로부터 배제 - 5인 미만 / 농업노동자는 '배제되어 있다!'

사례표의 22개의 모든 사건의 피해노동자들은 '대지급금' 을 받을 수 없었거나, 받을 수 없다. (대지급금 지급불가 통보서: 1번 사례)

(3) 서울보증보험

'체불임금 확인서' 의 발급 및 체출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 또는,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보증보험사는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 를 발급하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이 공적이고 독점적인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5. 제안

단기 체류자격 노동자 (E-9)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고, 그 구제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가 필요하다.

(1)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는 즉시' 모든 피해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2) 피해노동자의 임금체불 구제활동기간 (항의에 따른 직무배제 / 해고 / 진정 제기 등으로 실직한 때부터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고,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한 날까지) 비자기간 연장

(3) 청산불가한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G1 비자가 아닌) E9 비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 청산불가한 체불 : 대지급금/서울보증보험 등 공공보상장치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체불.

* 연장 지급기간 산정의 예

E9 연장기간 (개월) =

민사법정 판정 피해액(혹은 체불임금 확인서의 체불액) ÷ 월통상임금액의 50% (생활비용 비율)

(4) 고용노동부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 중 산재보상보험 의무가입자에게만 고용허가를 할 것!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지 말 것!)

〈발제2〉

어업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상황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 집)

어업이주노동자(E-9-4) 임금체불 상황

김호철 사무국장(성요셉노동자의집)

앞서 사례 발표한 동티모르 국적의 아우구스토는 상시 근로자수가 3인인 2.5톤의 소형선박인 거항3호를 사업장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2016년 7월 4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최장 근무기간은 4년 10개월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 체류기간 연장절차를 통해 총 5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체불임금은 임금 3개월분(월 250만원) 750만원과 퇴직금 중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차액분 5,187,270원으로 총 12,927,270원에 달한다. 고용허가제에서 의무 가입해야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코로나 특별연장으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 가입신청을 해야 했었지만 사업주는 미가입했고, 고용노동부의 확인과 점검도 누락되면서 퇴사 시점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우구스토는 임금체불 보증보험(400만원 한도)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은 산재 의무 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임금, 퇴직금 각 최대 700만원 / 합계 최대 1,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농/어업 중 법인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재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간이대지급 조차 신청할 자격이 없다. 즉 아우구스토의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 오롯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그렇지만 사업주 개인 명의의 재산은 300만원 상당의 청약저축이 유일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06만원 상당의 금액만 추심할 수 있었다.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진행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박에 대한 경매를 진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박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데 1,000만원이 넘는 제반비용을 선납해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경매 진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 농/어업의 경우, 일부 법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어업경영체를 통한 개인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제도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서울보증보험의 체불임금 보증보험(최대 400만원)이 유일한 보호장치이지만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당시 보증 금액 최대 200만원에서 근 20년이 지난 2021년에야 보증 금액이 최대 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증액된 최대 보증 금액 400만원 조차도 두달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튼 체불임금액이 보증보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있기를 바래야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을 허가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고 믿었던 고용노동부는 뒤로 빠지고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당사자간 해결하라고 방조를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고 한국에 왔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그 체불금액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제조업보다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이탈 또는 미등록 비율이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업의 불규칙한 휴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지청이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방문 시 열악한 이동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한국어 학습 기회에 대한 어려움을 작용하고 임금체불 초창기 즉 체불임금이 적었을 때 상담이나 진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 어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도서 지역이면 이 모든 문제가 극단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어업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장 지도점검과 감독이 절실하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때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이기에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3〉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1. 시작하며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국 국가에서 온 약 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제조업, 건설, 농어업 사업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정부는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력도입규모를 올해 11만명, 내년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도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한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으로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은 앞으로도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정부가 소개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1]가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에 대해 고용을 독점하여 알선하는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절차,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지급절차, 민사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법무부는 피해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도 하지 못한 채 모든 법적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례[2]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2015년 6월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캄보디

1)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 연속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매년 1천억원을 넘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는 약 2만 3천명이다.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4년째 1천억원 넘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5)

2) MBC 뉴스 2020. 4. 9.자 보도,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빈 손으로 울며 귀국,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6797_32524.html
MBC 뉴스 2020. 10. 30.자 보도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캄보디아 청년의 호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7909_32524.html
경향신문 2020. 11. 12. 보도, 노동부 알선 농장서 3년 넘게 일하고 3400만원 못 받아 한국사람 나쁜가요,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011122046015

아 출신) A씨는 약 3년 동안의 임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노동력착취 인신매매'를 당했다. 2020년 3월 피해를 신고하려고 하자 사용자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내역을 기재해 둔 피해자의 수첩을 불에 태워 손괴했다[3].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 그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가 인정하는 금액[4]만 확인해 주었을 뿐 달리 그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이주노동자는 지난 2월 3일 정부 소개 사업장에서 노동력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국가배상소송[5]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6].

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체불(滯拂)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용자 입장의 언어일 뿐, 이번 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노동자 입장의 언어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라고 칭한다. 1년에 임금체불 신고액이 1조가 넘는 이른바 임금체불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내국인 임금체불 문제와 다른 측면이 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고용허가제도 하에

3) 사용자의는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사용자의 재물손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1,500원짜리 노트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보통의 재판'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약식명령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약식기소대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다. 사용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래도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 3712)

4)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내역을 기재해 둔 피해자의 수첩을 사용자가 불에 태워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계산한 체불임금만 2016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9,489,727원(숙식비 공제금액)이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체불임금을 32,198,477원으로 확인했다. 임금체불액수를 2016년 7월이 아닌 2018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임금계산을 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이미 관련 기록을 검찰로 송치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부존재'로 회신을 했고, 관련 소송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검찰은 관련 부분 제공을 불허가 하였다)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2925 손해배상(국)

6) 경향신문 2023. 5. 10. 보도, 3400만원 임금 떼인 이주노동자에 "비자 연장해주지 않았냐"는 정부,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101749011

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알선은 바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와 구별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 임금체불 공익신고 자체의 어려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질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설명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피해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주노동자는 자유롭게 관련 신고를 하고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는가?

일단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는 임금체불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조건 위반을 떠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임금체불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즉각적인 신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 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 마.「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기도 한다. 앞에서 소개한 A씨 사례처럼 사용자가 임금체불신고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근로시간을 기재한 노트를 불로 태우는 등 협박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제도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이 종료된 이후 추가로 4년 10개월 연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을 해 주겠다고 이주노동자를 회유를 받는 일도 있다.

임금체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는 국가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등 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임금체불 이주노동자는 그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임금체불 공익신고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당한 임금체불 피해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려면, 적어도 ‘즉각적인 사업장변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및 실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임금체불 액수 산정시 근로시간 확정의 어려움

이주노동자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별히 농업 근무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한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아래와 같이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기록한 노트를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노동자가 노트 등에 기록한 내용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둘째, 노동자가 노트 등에 기록한 내용은 노동자 임의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인정해주지 않고, 사업주가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해 준다.

어떤 근로감독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부당하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입증을 강요할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시간 확정을 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제출한 자료만이 유일한 증거자료이기에 근로감독관은 노동자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증하는데 조사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아무런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은 사용자가 결국 이기는 싸움이 된다. 실제 근로감독관이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수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감독관은, 1)고소인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고소인이 스스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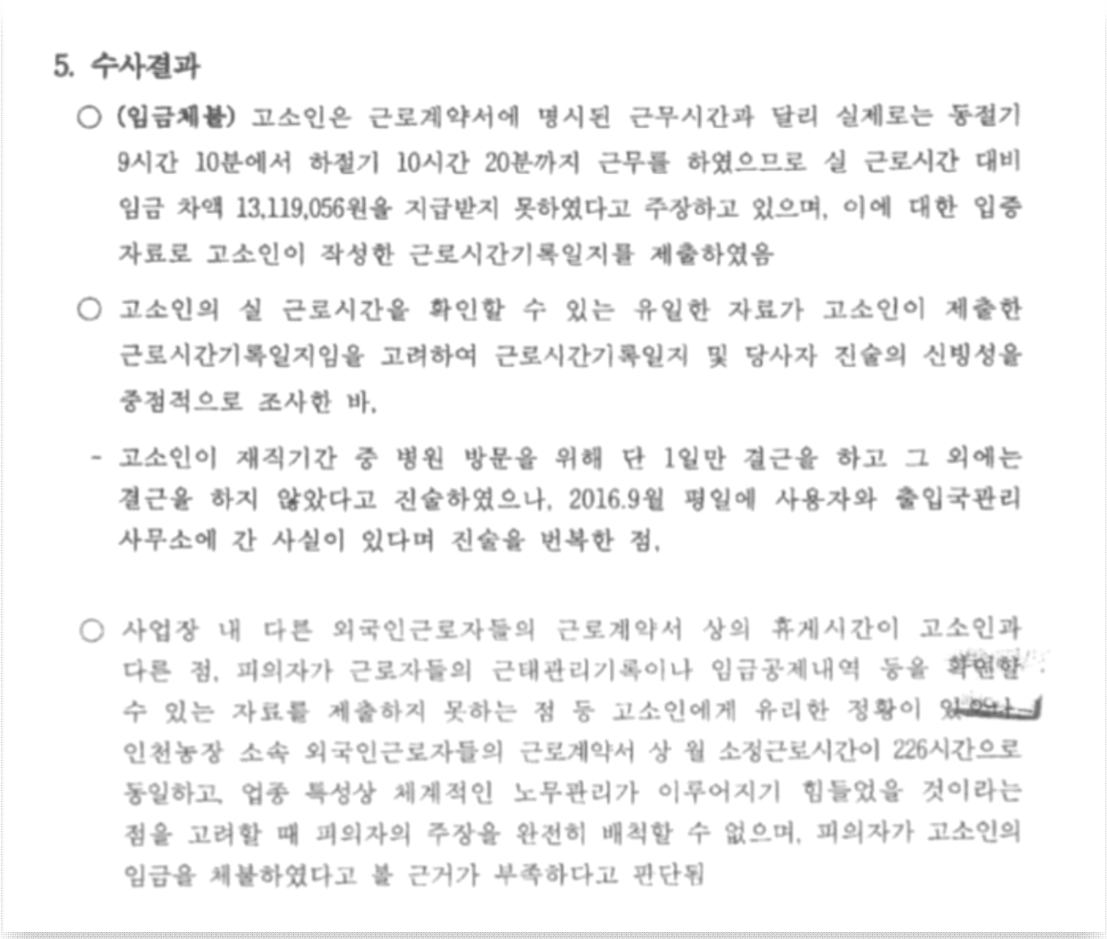

5. 수사결과

○ (임금체불) 고소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동절기 9시간 10분에서 하절기 10시간 20분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실 근로시간 대비 임금 차액 13,119,0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고소인이 작성한 근로시간기록일지를 제출하였음

○ 고소인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고소인이 제출한 근로시간기록일지임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기록일지 및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 고소인이 재직기간 중 병원 방문을 위해 단 1일만 결근을 하고 그 외에는 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9월 평일에 사용자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간 사실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 사업장 내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고소인과 다른 점, 피의자가 근로자들의 근태관리기록이나 임금공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고소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으나, 인천농장 소속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동일하고, 업종 특성상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한 근로시간 기록일지라는 점, 2)고소인이 위 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한 점, 3)업종 특정상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하였다.

다. 임금체불 채권추심의 어려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지만, 그 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카드뉴스(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절차도 중 발췌)

임금체불보증보험, 간이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구제를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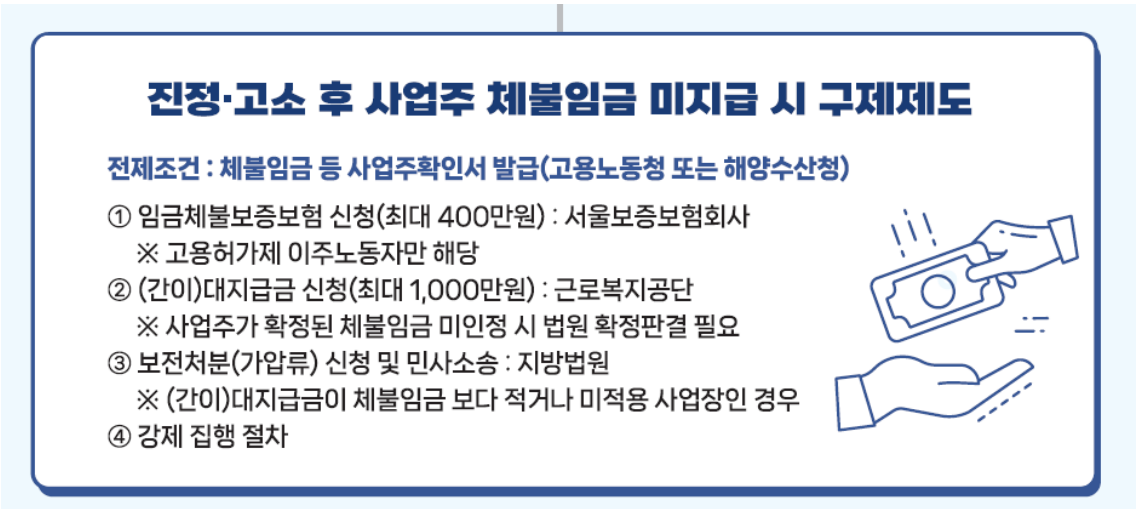

수 있다. 그러나 1,4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강제집행 할 사업주의 재산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체불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강제집행 할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주지는 못한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확정판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그나마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규정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또한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업장(2만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하고 있음)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적용제외이기에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라. 법적절차 진행 중 생계유지의 어려움.

임금체불 피해자로 노동청 진정을 한 이주노동자는 공익신고자다.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공익신고 후 관련 법적절차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G-1-4(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과 G-1-3(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고, 체류기간 또한 6개월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류자격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 체류자격 연장시 생계유지능력을 심시한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원받는 일이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체류자격연장을 포기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만다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G-1-11)은 대상자에 '성폭력범죄, 성매매강요, 상습폭행 · 학대, 심각한 범죄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 · 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G-1-4와 G-1-3가 달리 기본 체류기간도 1년이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의 이주노동자 A씨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G-1-11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지만, G-1-11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법무부가 2023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G-1 비자 보유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국내 체류 방편으로 체류자격을 악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민사소송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7].

3.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해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방안

가. 정부통계작성 및 발표 필요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해결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7) 법률신문 2023. 1. 26.자 보도,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임금 받기 전에 불법 체류자 등 전락 위기 https://www.lawtimes.co.kr/news/184703

임금체불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신고액 통계만 발표하고 있다. 1,000억원이 넘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이 발표되는데, 체류자격 유형별 임금체불 신고액이 얼마인지, 신고액 1,000억원 중 추심이 완료된 금액과 그렇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적 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다.(그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이 얼마인지, 그 중 청산이 완료된 금액과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나. 임금체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사업장변경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을 하였고, 정부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사유, 횟수 제한 폐지'로 결론[8]내렸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사업장변경제도의 원칙적 금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사업장변경을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공익신고 피해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도 도입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 고용주가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FLSA 위반이 된다. Anderson v. Mt. Clemens Pottery Co.[9]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기록

8) 경향신문 2021년 11월 10일 보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1100600001

9) • In an off-the-clock case, if the employer failed to keep records of employee hours worked, then the damages proceedings will be less precise than they would have been if the employer had kept the legally required records. In the early days of the FLSA, the Supreme Court in Anderson v. Mt. Clemens Pottery Co. held that FLSA defendants should not benefit from the evidentiary complications that result from their own record-keeping failures, because it "'would be a pervers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justice to deny all relief to the injured person, and thereby relieve the wrongdoer from making any amend for his acts. [328 U.S. at 687-88, 66 S. Ct. at 1192-93]

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증거의 불이익은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 종료시간을 일, 주, 월 단위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별도의 입법발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주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라.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 정부개입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의 개입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사업주의 임금채부를 사적 근로계약으로 인한 단순한 채무 이상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2) 사적계약의 사적책임을 우선하되, 임금채무를 장기적으로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무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개입
(3) 사적계약의 사적책임 원칙을 우선하고 사업가동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떤 개입도 배제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취소를 하고 일정기간 고용제한을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임금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있기에 (3)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한국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장이 결정된다. 사업장 변경시에도 고용노동부의 알선만 가능하다.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독점적으로 알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사각지대(법인 아닌 상시 근로자 5인미만 농어업 사업장) 해소부터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법적절차 진행 중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임금체불 피해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중대범죄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G-1-11 같은 유형의 체류자격이 부여되거나 관련 법적절차 진행 중 E-9(고용허가제) 기간연장되어야 한다. 임금체불 공익신고자인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서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최근 고영인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0]에는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4. 마치며

일제강점기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인을 일본 기업 공장에 강제동원하여 종사하게 한 일을 우리는 '강제징용'이라 부른다. 한국 농장과 공장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16개국 외국 청년들을 한국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고용허가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직접 알선하여 일하게 한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외국 청년들은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일본의 강제징용을 비판하는 우리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외국 청년들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한국정부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3123, 제안일자 : 2023. 7.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발췌]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중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경우 기타(G1) 사증이 발급되는데, 해당 사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함. 이에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체불임금·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등).

〈토론1〉

토론

임선영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토론2〉

토론

최재윤 팀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 및 체류대책 TF)